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가단724, 2018가단318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채무변제) (병합)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변론 종결 2018. 11. 6

판결 선고 2018.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은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C 임야 9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09. 2. 23. 접수 제27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이에 기초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 11.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09. 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K)0,000원,채 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2. 1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2. 20. 피고 요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B어 | 게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E가 그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카단32328호로 위대여금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E가 소유한 서울 종로구 F대13,935㎡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2010. 1. 19. 위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E는 2013 . 9. 25. G 주식회사에 자신이 소유한 위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중 일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같이 연대보증인인 E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장두영